

authoritative.

Article 40 - Registration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DONE at Paris, this third day of November 2003,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32n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These two copies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UNESCO. Certified true copies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2 and 33,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The above text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Convention hereby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t its 32nd session,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on the seventeenth day of October 2003.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this third day of November 2003.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Director-General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4월 1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 이웅섭
행정자치부장관

● 대통령령 제1944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

로 하며, 동호가목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회사정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나목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제3호의 1”을 “제3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중 매년”을 “매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

는 경우

가. 정부출자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일 것

나. 가목의 정부출자기관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것

제1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전단중 “10억원 이상(상품·용역의 경우에는 단일 거래규모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내부거래위원회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4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6호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2004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 동안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여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의 보완(영 제17조제2항제4호)

(1) 현재 기업집단의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제외기준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가 자연인인 기업집단만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기업집단은 그의 지배력 남용문제가 없음에도 동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기업집단도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 인정(영 제17조의2제2항제6호 신설)

(1)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매각절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3) 출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의 완화(영 제17조의9제1항제3호)
- (1)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너무 많으며,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 (2)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완화함.
- (3)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 과학기술부령 제84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4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인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29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6호”를 “법 제20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출연금·용자금 및 수익금
2. 영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입금 및 수입금
3. 현물자산의 운용 수익금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용도로 이를 운용한다.